

문서번호	생활보장과-68 7
결재일자	2016.1.7.
공개여부	부분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생활보장과장	주민생활국장
길재호	유숙희	이승하	01/07 강대형
협 조			

**2016년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(장애인회관)
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지원계획**

2016.01.07.

강 북 구

2016년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(장애인회관)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지원계획

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장애인이 행복한 “희망 강북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근거 및 방향

■ 추진근거

- 『서울특별시강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』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1항제1호

■ 추진방향

- 기존에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- 무료급식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급식운영 전반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II 사업개요

■ 사업기간: 연 중 (매주 월~금요일 12:00 ~ 13:00)

■ 급식대상: 강북구 거주 저소득 장애인

■ 운영장소: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(덕릉로 126)

※ 장애인회관(인수봉로 291) 개관 후 장소 변경

■ 운영단체: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(회장 유영호)

■ 운영관리

● 구: 보조금 교부, 무료급식 운영 관리·감독

● 단체

- 식단관리: 주 단위 식단 작성, 식자재 구매 및 조리·배식, 위생관리

- 대상관리: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일별 식사 제공

■ 인력현황: 사무국장 1명, 팀장 1명, 공공근로 10명 (총 12명)

III 추진일정

■ 보조금 월별 교부: 8,100천원 × 12월 = 97,200천원

■ 분기별 정산서 점검

■ 연 1회 이상 무료급식 식당 위생 및 운영현황 점검

IV 소요예산

■ 사업비: 97,200천원 (구비)

■ 예산과목: 생활보장과, 장애인복지증진, 장애인복지지원,

장애인단체 지원, 민간이전, 사회복지사업보조

■ 사업비내역: 후생경비, 비품구입비, 소모품비, 주유비, 관리비 등

지출항목	소요예산 (단위 천원)	산출근거	비고
계	97,200		
후생경비	83,160	1식 단가 1,650원 × 1일 210명 × 20일 × 12월 = 83,160,000원	
비품구입비	2,400	주방용품 및 기기 구입비 200,000원 × 12월 = 2,400,000원	
소모품비	1,800	쓰레기봉투, 냅킨 등 150,000원 × 12월 = 1,800,000원	
주유비	600	50,000원 × 12월 = 600,000원	*식자재 구매용
관리비	9,000	음식물처리비, 도시가스요금, 집기수리비 등 750,000원 × 12월 = 9,000,000원	
잡지출	240	복리후생비 : 상비약 등 20,000원 × 12월 = 240,000원	

- 붙임 1.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현황 1부.
2. 협약서(안) 1부. 끝.

붙임 1>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현황

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현황

단체사무소소재지		서울 강북구 덕릉로 126 우일빌딩 1층			
대표자	유영호	생년월일	670802	전 화	989-2223, *****
설립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-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- 장애인의 자활도모 - 강북구 내 활동 중인 장애인단체를 통합하여 강북구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일원화 				
단체연혁	- 단체설립일: 1996년 10월 18일				
회 원	총 회원	2,365 (27단체)	임 원	46명	일반회원 2,319
임 원 인적사항	단체명	대표자	주 소		전화번호
	총연합회장	유영호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지체장애인협회	정수민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참세상II센터	유영호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교통협회	이재호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신장협회	박문수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체육회장	유성호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시각장애인	정수균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쉼 터	이웅열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곰두리봉사협회	이만식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환경협회	이석호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수영협회	이애정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내일을여는멋진여성	이정애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사이클	주형묵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배드민턴	김원준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기능협회	이주형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장애인장학회	심상팔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장애인유권자연맹	김재진	번2동 314번지		*****
	농아인협회	박태호	번1동 417-24 경일빌딩3층		*****
	정보화협회	이상원	번2동 314번지		*****
	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	최정숙	번2동 441-24 우일빌딩1층		*****
	장애인학부모회	정재숙	번2동 441-28 우일빌딩 1층		*****
	장애인자율봉사	조광영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장애인파크골프	이미화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장애인e스포츠연맹	김호준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휠체어협회	박종해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	당구협회	송임근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
장애인녹색재단	김재진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	
보호작업장	석정하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	
교통장애후유	송상현	번2동 441-28 우일빌딩1층		*****	

「2016년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사업」 운영에 따른 협약서(안)

강북구와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는 「2016년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」 사업을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강북구가 사회복지보조사업인 「2016년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」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“연합회”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개요) 이 협약에 의하여 강북구는 “연합회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, 사업기간,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업의 명칭 : 2016년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사업
2. 사업의 내용 : 결식우려 장애인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
3. 사업의 대상 : 강북구 거주 장애인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장애인
4. 협약기간 : 2016.01.01. ~ 2016. 12. 31.
5. 지원금액 : 금97,200천원
6. 시 설 명 :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(장애인회관)
7. 운영단체 :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

제3조(사업범위) “연합회”는 「2016년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」 사업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무료급식 운영 : 식자재 구매, 조리, 배식 및 식당 위생 관리
2. 급식대상 관리 :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자에 한해 무료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급식대상 선별·관리

제4조(사업계획) ① “연합회”는 당해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선정관련 제출된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.)

②“연합회”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강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사업실시의 원칙) ① “연합회”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.

② “연합회”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되며,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외에 부적합한 대상자에게 급식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
③ “연합회”는 무료급식 대상자에게 본 협약서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요건 외에 불필요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거나 운영규정에 정한 예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④ “연합회”는 장애인들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단 작성, 식자재 구매, 조리 등에 적극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⑤ “연합회”는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당 및 관련 인력의 위생관리는 물론 식자재 구매, 조리, 배식 등 급식의 전 과정에서 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
⑥“연합회”는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(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)을 엄수하여야 한다.

⑦ “연합회”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제6조(사업비의 관리) “연합회”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사업 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.

제7조(사업이행의 보증 등) ①“연합회”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강북구가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강북구를 피 보험인으로, 보험기간은 협약일~매 회계년도 말일까지로

하여 그 원본을 2016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비의 지급, 집행 등) ① 강북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)를 “연합회”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.

② “연합회”는 사업비를 강북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, 지방재정법,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
③ “연합회”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 결제 카드로 집행해야 한다.

④ “연합회”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해야 하고,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.

제9조(사업실적 제출) “연합회”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, 사업실적을 다음년도 시작 월 10일까지 강북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업비 정산 및 반환) ① “연합회”는 강북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자료를 다음 분기 시작 월 10일까지 강북구에 제출한다.

② “연합회”의 사업비 정산서는 사용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, 은행계좌 입금증 등으로 하며, 강북구는 “연합회”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·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“연합회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강북구는 “연합회”에 제2항의 수정·보완요구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확인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“연합회”에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“연합회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“연합회”는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은 반납고지서

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관계법령 등의 준수) “연합회”는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강북구는 사업과 관련한 “연합회”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강북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“연합회”에 요구하거나 강북구의 소속직원 또는 강북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연합회”의 업무상황·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“연합회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3조(손해배상 등) ①“연합회”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연합회”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“연합회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북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연합회”는 이를 강북구에 지정기한 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4조(협약의 해지) ①강북구 또는 “연합회”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(이하 “해지 등”이라 한다)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②강북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연합회”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
2. “연합회”가 사업수행 중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
3. “연합회”가 사업을 하도급 한 때
4. “연합회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강북구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때
5. “연합회”가 사업추진을 포기한 때

③강북구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“연합회”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

“연합회”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강북구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⑤강북구는 “연합회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 및 해석) ① 이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을 준용한다.

②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강북구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6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.

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강북구와 “연합회”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③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강북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.

2016년 1월 일

“강북구” 주소 :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(인)

“연합회” 주소 : 서울 강북구 덕릉로 126
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(인)